

의안 번호	제3566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01월 31일, 황성석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2월 1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2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2월 18일

2. 개정이유

- 「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가 일부개정됨에 따른 2025년 1월 1일자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맞추어 김포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범위 수정(안 제2조제2호)
 - “안전담당관,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”을 삭제하고 “안전기획관, 홍보기획관, 감사관”으로 변경.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가 일부개정됨에 따른 집행기관 조직개편(2025. 1. 1.)을 반영하여 김포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“담당관”을 삭제하고 “안전기획관, 홍보기획관, 감사관”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범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첨부서류 : 원안 붙임

김포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**담당관**”을 “**안전기획관, 홍보기획관, 감사관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범위) 김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장, 국장, <u>담당관</u>, 과장급</p> <p>3. ~ 7. (생략)</p>	<p>제2조 (범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안전</u> <u>기획관, 홍보기획관, 감사관</u>----- -----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